

퇴직연금(IRP)에서 제공하는 연금 지급방식 현황과 시사점

2023. 12. 8

이정원 연구원

CONTENTS

I.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연금수령 증가

II. 퇴직연금(IRP)에서 제공하는 연금지급방식

1.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연금지급방식
 2. 현행 연금지급방식의 특징과 활용방법
 - 1) 금액지정방식
 - 2) 기간지정방식
 - 3) 생명보험 계약방식
 - 4) 기타 연금지급방식
-

III. 결론 및 시사점

< 요약 >

-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국내 연금시장은 빠르게 성장해 퇴직연금 적립금 335.9조원을 축적함.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퇴직 연금 시장은 연금 적립과 함께 연금 수령의 중요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본고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기준 퇴직연금사업자 20개를 선정하고, 해당 퇴직 사업자가 현재 IRP 계좌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금지급방식을 점검함.
 -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 중인 연금지급방식은 금액지정방식(정액형, 체증형, 체감형), 기간지정방식(정기형, 구간지정형, 연금수령한도형), 보험계약방식(종신형, 상속형, 확정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이밖에 수시인출형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연금지급방식으로 수시인출형(20), 정기형(19), 정액형(17), 연금수령한도형(9)이 있음.

주요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IRP) 연금지급방식

지급방식	사업자 수	내 용
수시인출형	20	· 가입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정기형	19	·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 수령기간을 확정하는 대신,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됨
정액형	17	· 일정 주기마다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 연금액에 변동이 없으나, 연금 수령기간은 유동적임
연금수령한도형	9	· 세법이 정한 연금수령한도에 맞춰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 절세혜택, 필요한 생활비와 연금 수령액 간에 차이가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들이 다양한 연금지급방식을 제공 중이나, 법률 및 세제로 인해 은퇴자의 실제 소득설계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존재함.
 - 정기형은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도 수령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세금 부담이 늘고, 정액형은 연간 1,200만원((2024년 세법개정안 기준 1,500만원으로 변경 예정)을 초과해 수령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하며, 연금수령한도형은 수령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음.
- 앞으로 은퇴자의 노후 소득설계 관점에서 퇴직연금 외에 국민연금, 주택연금을 연계해 부족한 퇴직연금 적립액을 보충하고 종합적인 연금 수령 계획을 수립하는 ‘한국형 인출전략’의 마련이 필요함.

I.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연금수령 증가

1. 늘어나는 적립금, 아직은 미미한 연금 수령

● 퇴직연금 자산관리는 재직기간 동안 퇴직급여를 축적하는 과정과 퇴직 후 축적한 연금자산에서 노후생활비를 인출하는 과정을 전부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회사의 부도와 같은 재무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근로자가 퇴직한 후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확보하는 데 있음.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 수령 플랜을 제시해야 함.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적립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이체해야 함.
 - 55세 전 퇴직자는 IRP에 의무 이체해야 하고, 55세 이후 퇴직자는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를 선택해 퇴직급여를 이체할 수 있음.
 -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 퇴직연금 가입자가 연금수령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은퇴 후 수입·지출 구조와 연금수령 한도 등 세제 혜택, 적립금 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함께 꾸준히 적립금 규모를 확대해 왔음. 하지만 대부분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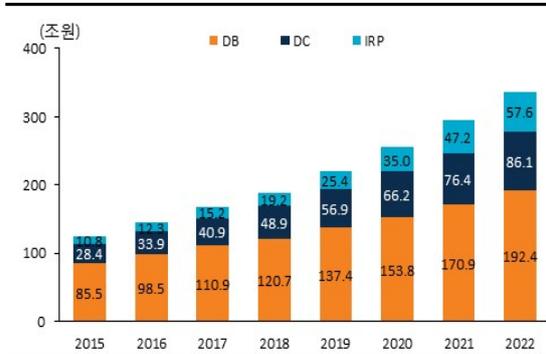
-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퇴직연금 자산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2006년 말 7,567억원에 불과했던 퇴직연금 적립금이 2022년 말 335.9조원으로 증가함. (연평균 성장률 46.4%)
- 2022년에 퇴직연금 지급(만 55세 이상)을 개시한 계좌(457,468좌) 중 연금으로 수령한 비중은 7.1%에 불과함. 금액 기준으로도 전체 15.5조 원 중 32.6%만 연금으로 수령함.
- 퇴직연금 도입 이후 적립기간이 늘어나면서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중도인출 요건이 강화됐고, 퇴직연금 가입률이 상승하고 적립금 규모가 확대된 영향 등으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가입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2. 축적에서 인출로 전환하는 퇴직연금 자산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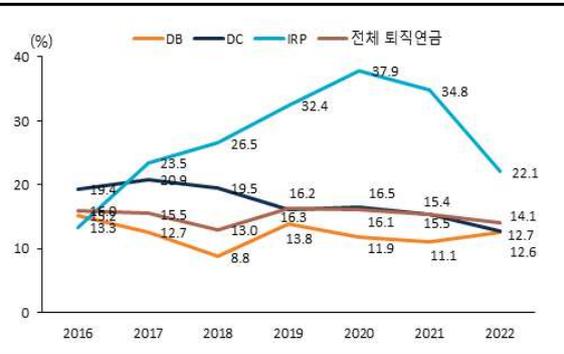
◎ 퇴직연금 적립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IRP 적립금 증가 속도가 빠름.

-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35.9조 원에 달함. 적립금 중 DB형이 57.3%(192.4조원), DC형은 25.6%(85.9조원), IRP는 17.2%(57.6%) 차지함.
- 적립금 규모는 IRP가 가장 작지만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 2022년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대비 14.1%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IRP 적립금은 22.1% 증가함.
-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노후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하는 추세임.

〈도표 1〉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도표 2〉 퇴직연금 적립금 전년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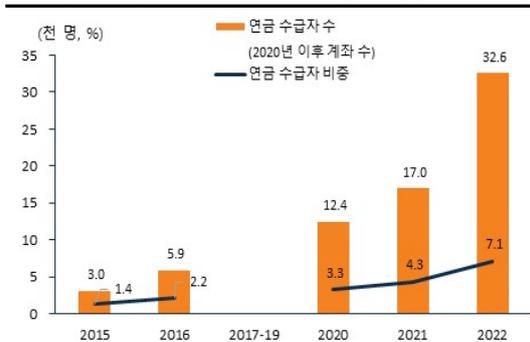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분석 (각 연도별)

◎ 아직까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연금 수령 계좌 수와 금액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연금수령 비중은 2015년 1.4%에서 2022년 7.1%로 상승했고, 수급 개시 금액 중 연금수령 비중은 같은 기간 3.1%에서 32.6%로 상승함.

〈도표 3〉 퇴직연금 연금수령 비중(계좌 기준)



〈도표 4〉 퇴직연금 연금수령 비중(금액 기준)



자료 : 통계청「퇴직연금통계(2015~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 적립금 현황(2020~22)」, 2017~19년 통계 미발표

◎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인원과 수급 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자는 3,035명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연금 수령 계좌 수가 12,404좌로 늘어남. 이후 2021년 16,984좌, 2022년 32,566좌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금 수급금액도 2015년 1,121억원에서 2020년 2조 3,565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이후 2021년 3조 2,028억원, 2022년 5조 6,399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도표 5〉 퇴직연금 수령 인원(계좌) 및 수급 금액

	2015	2016	2017~19	2020	2021	2022
인원(계좌)	3,035명	5,866명	미발표	12,404좌	16,984좌	32,566좌
수급금액	1,121억원	3,311억원	미발표	23,565억원	32,028억원	50,639억원

자료 : 통계청「퇴직연금통계(2015~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 적립금 현황(2020~22)」, 2017~19년 통계 미발표

◎ 퇴직급여 규모가 큰 퇴직자일수록 퇴직소득세 절약의 측면에서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함.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퇴직소득세 산정 시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므로 퇴직급여 규모가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짐.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70%(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할 때부터는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시 퇴직소득세의 60% 적용)에 해당하는 세금을 연금소득세로 납부함. 따라서 높은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는 퇴직자일수록 연금을 선택할 때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남.
- 2022년 기준으로 일시금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2,459만원으로 연금수령 계좌 평균수령액(1억 5,550만원)의 15.8% 수준에 불과함.

〈도표 6〉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2022년)

(단위: 좌,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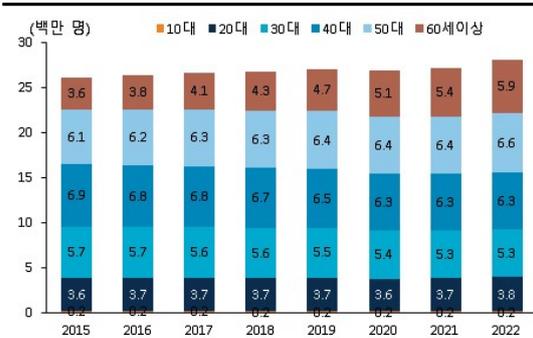
구분	연금수령		일시금 수령		합계	
		비중		비중		비중
계좌수(A)	32,566	7.1	424,902	92.9	457,468	100.0
금액(B)	50,639	32.6	104,474	67.4	155,113	100.0
계좌당금액 (B/A)	1.55	-	0.25	-	0.34	-

자료 : 고용노동부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 현재 은퇴를 앞둔 50세 이상 근로자 수 및 이들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등을 고려하면, 향후 퇴직연금 인출시장 규모는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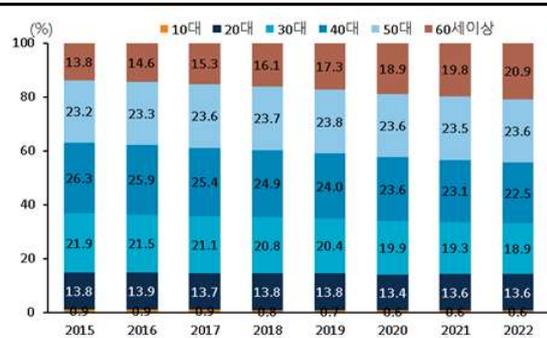
- 2022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2,809만명) 중 50세 이상자(1,248만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44.4%로 높은 수준임. 50세 이상 취업자가 퇴직하기 시작하면 연금 인출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기준 50대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57.3%로 30대(61.0%)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60세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도 36.9%에 이르고 있음. 이들의 퇴직이 본격화되면 인출 단계에서의 연금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50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대상 근로자(461만명) 중 46.6%(215만명)이 퇴직연금 가입

〈도표 7〉 연령대별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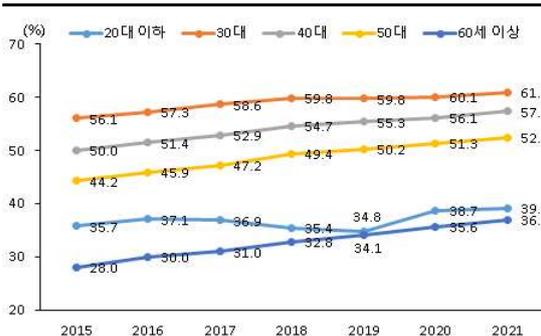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도표 8〉 연령대별 취업자 비중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도표 9〉 연령별 퇴직연금 가입률



자료 : 통계청 「연금통계」

주 : 가입률 = 가입 근로자 수 / 가입대상 근로자 수

〈도표 10〉 50대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 수



자료 : 통계청 「연금통계」

◎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연금지급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본고에서는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IRP 계좌에서 제공하는 연금지급방식을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연금지급방식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하고, 인출기 자산관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II. 퇴직연금(IRP)에서 제공하는 연금지급방식

1.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연금지급방식

● 총 42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순으로 상위 20개를 선정하고,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들이 IRP 계좌에서 제공하는 연금지급방식을 조사함. (2023년 3분기 기준)

- 조사 대상에는 은행 7개, 증권사 7개, 생명보험사 4개, 손해보험사 2개가 포함됨.
- 홈페이지와 현장 방문을 통해 주요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금지급방식을 조사함.
 -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 지급 개시 신청서」에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연금지급방식을 파악하고, 세부 내용은 고객센터 방문 등을 통해 추가로 자료를 수집함.

〈도표 11〉 연금 적립금 규모 상위 20개 퇴직연금사업자

금융업권	증권 (7개)	은행(7개)	생보사(4개)	손보사(2개)
퇴직연금사업자	미래에셋증권 현대차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KB손해보험

자료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2023년 3분기 기준

● 현재 주요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제공 중인 연금지급방식은 크게 금액지정방식, 기간지정방식, 보험계약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금지급방식은 연금 수령액을 지정하는 금액지정형, 연금수령기간을 지정하는 기간지정형,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보험계약형이 있음.
- 연금지급방식을 좀 더 세분화하면 금액지정방식 중에서는 <정액형>, 기간지정방식 중에서는 <정기형>과 <연금수령한도형>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연금 수령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정액형>을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17개, 연금 수령기간을 확정하는 <정기형>을 제공하는 연금사업자가 14개 있음. 이밖에 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수령한도형>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9개 있음.

- 금융업권별로는 증권사와 은행은 금액지정방식과 기간지정방식에 해당하는 연금지급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방식을 통해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연금지급방식을 제공하고 있음.
- 이밖에 연금수급자가 연금수령총액이나 연금잔액을 지정하는 옵션을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도 있음. 그리고 조사대상 20개 퇴직연금사업자 모두가 연금수급자가 희망할 때 적립금을 수시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도표 12〉 IRP계좌에서 제공하는 연금지급방식과 퇴직연금사업자 수

구분		증권(7개)	은행(7개)	생보(4개)	손보(2개)	합계
금액지정 방식	정액형	7	6	2	2	17
	체증형	1	3	0	1	5
	체감형	1	2	0	0	3
기간지정 방식	정기형	6	6	1	1	14
	구간형	2	1	0	0	3
	연금수령한도형	6	3	0	0	9
생명보험 계약방식	종신형	0	0	4	0	4
	상속형	0	0	2	0	2
	확정형	0	0	4	0	4
그 밖의 연금지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인출형 (20), 좌수분할형(1), 금액-기간지정형(3) - 연금수령총액지정옵션(1), 연금잔액지정옵션(1), 비율매도옵션(1) 				

(2023년 10월말 기준)

2. 현행 연금지급방법의 특징과 활용방법

1) 금액지정방식

◎ 금액지정방식은 일정한 주기(월, 분기, 반기, 연간)에 맞춰 가입자가 지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액형, 체증형, 체감형이 있음.

- 조사대상 20개 퇴직연금사업자 증권사 7곳, 은행 6곳, 생보사 2곳, 손보사 2곳에서 IRP에서 금액지정방식을 제공하고 있음.
- <정액형>은 연금수령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가입자가 연금수령액과 수령주기를 정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주기 같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함.
- <체증형>은 일정한 주기마다 연금을 증액해서 지급하는 방식. 가입자가 최초 연금액, 인상률을 정하면, 연금사업자는 인상률만큼 연금을 증액해서 지급함.
- <체감형>은 일정한 주기마다 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방식. 가입자가 최초 연금액, 감액률을 정하면, 연금사업자는 감액률만큼 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함.

◎ 금액지정방식은 연금수령액을 사전에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운용수익률에 따라 연금수령기간이 유동적이라는 단점도 있음.

- 연금수급자 입장에서 자신의 지출 규모에 맞춰 연금수령 금액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용수익률이 나쁘면 은퇴자산이 조기에 고갈될 우려가 있음.
- 최초 연금액, 운용 수익률, 증액(감액) 주기가 동일할 때, <체증형>, <정액형>, <체감형> 순으로 빠르게 연금이 소진됨.

〈도표 13〉 금액지정방식의 특징 및 활용

	정액형	체증형	체감형
내용	· 일정 주기마다 동일 금액 연금 지급	· 일정 주기마다 연금액을 증액해서 지급	· 일정 주기마다 연금액을 감액해서 지급
특징	· 연금액에 변동이 없음 · 연금 수령기간은 유동적임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연금의 구매력 유지 가능 · 정액형에 비해 연금이 빠르게 소진됨	· 지출계획에 따라 연금액을 줄어나갈 수 있음 · 연금 개시 초기 수익률이 나쁘면 연금재원 조기고갈
활용	· 정기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 장기간 연금을 수령하면서 구매력 유지하려고 할 때	· 연금개시 이후 지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2) 기간지정방식

◎ 기간지정방식은 가입자가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기(월, 분기, 반기, 연간)에 맞춰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정기형, 구간형, 연금수령한도 방식이 있음.

- <정기형>은 가입자가 정한 연금수령기간에 맞춰 연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방법임.
- 연금수령액 = 당해 연도 연금재원 평가액 ÷ 잔여 연금수령기간

(사례) 연금재원 2억원, 연금수령기간 10년, 연금 수령 주기 연1회

- 1년차 : 2,000만원(=2억÷10) 연금 수령, 나머지 1억8,000만원은 투자
1년 동안 900만원 수익을 얻어, 연말 연금재원이 1억8,900만원이 됨.
- 2년차 : 2,100만원(=18,900만원÷9) 연금 수령, 나머지 1억6,800만원은 투자
1년 동안 600만원 손실을 입어, 연말 연금재원이 1억6,000만원이 됨.
- 3년차 : 2,000만원(=16,000만원÷8) 연금 수령, 나머지 1억4,000만원은 투자.
- 4~10년차 연금액은 같은 방식으로 연금액 산정

- <구간형>은 연금수령기간을 다시 2~3개 구간으로 나누고, 연금재원을 구간별로 나눠 배정한 다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임.

(사례) 연금수령기간 10년을 3개 구간으로 구분 (1구간 5년, 2구간 3년, 3구간 2년)
 연금재원 배분 : 1구간 70%(7억원), 2구간 20%(2억원), 3구간 10%(1억원)

- 1구간(5년) : 7억원을 배정 받아 5년 동안 정기형 방법으로 연금 지급
- 2구간(3년) : 처음 배정 받은 2억원과 이를 5년 동안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3년(6~8년차) 동안 정기형 방법으로 연금지급
- 3구간(2년) : 처음 배정 받은 1억원과 이를 8년 동안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2년(9~10년차) 동안 정기형 방법으로 연금지급

- <연금수령한도형>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임.

- 현행 소득세법에는 연금계좌 가입자가 적립금을 일정기간 이상 연금 형태로 인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시 절세혜택을 제공함.
-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낮은 세율로 과세함.

$$\text{연간 연금 수령한도} = \frac{\text{과세기간 개시일 (연금개시 신청일) 현재 평가액}}{(11-\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 * 1. 최초로 연금수령이 가능한 해를 1년차로 하며, 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연차는 경과됨.
- 2.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1월 1일 갱신되며, 11년차부터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 3.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또는 해당 계좌(DB형 퇴직연금 포함)에서 새로 개설한 연금계좌로 적립금을 전액 이체한 경우 연금수령연차를 '6'에서 시작

◎ 연금수급자 입장에서 기간지정방식은 연금수령기간을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운용수익률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도표 14> 기간지정형 연금지급방식의 념 및 활용

	정기형	구간형	연금수령한도형
내용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 지급	연금수령구간마다 연금재원을 배분해서 연금 지급	세법이 정한 연금수령한도에 맞춰 연금 지급
특징	연금수령기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대신,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됨.	은퇴자의 자금수요에 맞춰 연금재원을 배분할 수 있음	필요한 생활비와 연금수령액에 차이가 날 수 있음.
활용	일정한 기간 소득공백을 매울 때 적합함.	특정한 시기에 자금을 집중해서 인출하려 할 때	절세혜택을 최대한 누리며 연금을 많이 수령하려 할 때

3) 생명보험 계약방식

- ◎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조사대상 생명보험 4곳 모두 종신형과 확정형 연금지급방식을 제공하며, 상속형 연금지급방식은 2곳에서 제공하고 있음.
 - <종신형>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명보험회사에서만 가능한 연금지급방식임. <확정형>은 가입자가 지정한 연금수령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상속형>은 적립금에 대한 이자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임.
 -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연금 수령금액은 확정형>종신형>상속형 순으로 큼.
- ◎ 현재 생명보험회사는 적립금을 금리형(이율보증, 금리연동형) 상품에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2023.11.16.)으로 향후 IRP에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함.

〈도표 15〉 생명보험사의 연금 지급 방식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내용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지급	가입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연금 지급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또는 사망시 원금을 지급
특징	확정형과 상속형에 비해 연금액이 적고, 가입자 사망하면 연금이 종료됨.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수령기간이 끝나면 연금자산이 소진됨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만기(사망)시 적립금 잔액을 상속할 수 있음
활용	종신까지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고자 싶은 경우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원하는 경우

4) 기타 연금지급방식

- ◎ 앞서 설명한 방식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급방식과 부가 옵션이 존재함.
 - 조사대상 20개 퇴직연금사업자 모두가 <수시인출형> 연금지급방식을 제공하고 있음. <수시인출형>은 가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희망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임.
 - 기본적인 연금지급방식에 다양한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가입자의 세분화된 인출계획 수립을 돕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음.

〈도표 16〉 기타 연금 지급 방식

구분	내용
수시인출형	가입자가 희망할 때마다 원하는 금액만큼 수령
좌수분할형	보유상품의 전체 좌수를 지급 횟수로 나누고,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해당 좌수만큼 매도해 연금 지급
금액-기간 지정형	가입자가 연금수령기간과 금액을 모두 지정함
연금 수령총액지정 옵션	연금으로 수령하는 총 금액을 지정
연금 잔액지정 옵션	마지막 연금 수령 후 남길 금액을 지정
비율 매도 옵션	보유한 상품별로 매도 비율을 지정해 매도 후 연금으로 지급

Ⅲ. 결론 및 시사점

●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 2002년 335.9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연금 수령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44.4%('22년 기준)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축적한 연금자산으로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연금 자산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전망.
-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이뤄지는 시점에 주요 퇴직연금사업자들이 IRP 계좌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현황을 점검하는 것은 은퇴자 증가에 따른 연금 수령 확대와 관련 서비스 마련에 의미가 있음.

● 현재 IRP 계좌를 통한 퇴직연금 연금지급방식에는 대표적으로 정기형, 정액형, 연금수령한도형, 수시인출형이 있음.

-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 중인 연금지급방식은 금액지정방식(정액형, 체증형, 체감형), 기간지정방식(정기형, 구간지정형, 연금수령한도형), 보험계약방식(종신형, 확정형, 상속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이 밖에 수시인출형과 다양한 옵션도 제공하고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연금지급방식으로 수시인출형(20), 정기형(19), 정액형(17), 연금수령한도형(9)이 있음.

대표적인 퇴직연금(IRP) 연금지급방식

지급방식	사업자 수	내 용
수시인출형	20	· 가입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정기형	19	·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 수령기간을 확정하는 대신,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됨
정액형	17	· 일정 주기마다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 연금액에 변동이 없으나, 연금 수령기간은 유동적임
연금수령한도형	9	· 세법이 정한 연금수령한도에 맞춰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 절세혜택, 필요한 생활비와 연금 수령액 간에 차이가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들이 다양한 연금지급방식을 제공 중이나, 법률 및 세제로 인해 은퇴자의 실제 소득설계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존재함.

- 정액형은 연간 1,200만원(2024년 세법개정안 기준 1,500만원으로 변경 예정)을 초과해 수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해 원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함에 있어서 제한이 있음.
- 정기형은 은퇴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금 수령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 재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기타소득 재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함.
- 연금수령한도형은 세법상 절세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으나, 은퇴자가 필요한 연금과 실제 연금 수령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함.

◎ 앞으로 은퇴자의 노후 소득설계 관점에서 퇴직연금 외에 국민연금, 주택연금을 연계해 부족한 퇴직연금 적립액을 보충하고 종합적인 연금 수령 계획을 수립하는 ‘한국형 인출전략’의 마련이 필요함.

- 퇴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소득원을 확보할 수 없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을 활용함으로써 은퇴 후 지출에 대응하는 노후 소득을 설계하는 ‘한국형 연금 인출전략’의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연금 인출기는 단순히 계좌에서 필요한 돈을 꺼내 쓰는 것을 넘어서 인출 시기, 방식, 세제,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